

## 노 사 합 의 서

주식회사 케이티와 KT노동조합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DIGICO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며, 종사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을 위해 불임과 같이 합의한다.

불임 : 제도 개선사항 1부

2021. 9. 6

주식회사 케이티  
대표이사를 대리하여

경영지원부문장 신 현 옥

KT노동조합  
위원장은 대리하여

정책실장 변 우 영

[붙임]

## 제도 개선사항

### I. 인사제도

#### 1. 인사평가 보상기준 개선

가. 인사평가인상률을 아래와 같이 한다.

| 구 분              | S(10%) | E(30%) | G(50%) | N(5%) | U(5%)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
| 2분위 (50%초과~밴드상한) | 3.7%   | 2.7%   | 1.2%   | 0.0%  | 0.0%  |
| 1분위 (밴드하한~50%이하) | 4.3%   | 3.3%   | 1.6%   | 0.0%  | 0.0%  |

나. 임금피크 적용 대상자의 성과보상금은 아래와 같이 한다.

| 역량 \ 성과 | 성과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  | S     | E     | G     |
| S       | 360만원 | 290만원 | 150만원 |
| E       | 330만원 | 260만원 | 120만원 |
| G       | 270만원 | 200만원 | 60만원  |

다. 2021년도 인사평가부터 적용한다.

#### 2. 직급 승진인상액 개선

가. 직급승진시의 기본급 인상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.

<승진인상액(기본급)>

| G1→G2<br>(대리 승진) | G2→G3<br>(과장 승진) | G3→G4<br>(차장 승진) | G4→G5<br>(부장 승진)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100만원            | 230만원            | 280만원            | 330만원            |

나. 2021년도 정기인사 직급승진부터 적용한다.

### 3. 미래사업분야 인사제도 개선

가. 평가등급 분포비율은 아래와 같이 한다.

| 평가등급 | S   | E | G         | N | U |
|------|-----|---|-----------|---|---|
| 분포비율 | 10% |   | 부서장 자율 부여 |   |   |

나. 평가 마일리지는 평가등급 분포비율과 연동하며, 아래와 같이 한다.

| 구 분  | S  | E     |     |       | G | N | U |
|------|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|---|---|
|      |    | 30%이하 | ~   | 50%초과 |   |   |   |
| 성과평가 | 12 | 8     | 7   | 6     | 4 | - | - |
| 역량평가 | 6  | 4     | 3.5 | 3     | 2 | - | - |

다. 평가 인상률은 고정 분포비율 기준의 인상률 평균이 유지되도록, 평가등급 분포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.

① Pay Band 1/2분위 평균을 기준으로, S등급은 고정 인상률을 적용하고, E등급 이하는 조정 인상률을 산출한다.

$$\text{※ 조정 인상률} = \text{평가등급별 고정인상률} + \left\{ \frac{\text{고정분포비 평균 인상률} - \text{유연분포비 평균 인상률}}{\text{E등급 이하 분포비 합}} \right\}$$

② Pay Band 분위에 따라 S등급과 E등급은 각  $\pm 0.3\%p$ , G등급은  $\pm 0.2\%p$ 를 가감한다.

③ 성과평가 70%, 역량평가 30% 비율로 반영한다.

라. 임금피크 성과보상금은 유연평가로 조정된 비율을 반영하여 가감한다.

$$\text{※ 임금피크} = \frac{\text{상대평가 시 성과보상금}}{\text{성과보상금}} \times \left\{ \frac{\text{성과등급 조정 인상률}}{\text{성과등급 고정 인상률}} \times 70\% + \frac{\text{역량등급 조정 인상률}}{\text{역량등급 고정 인상률}} \times 30\% \right\}$$

마. 동료평가 결과를 성과·역량평가에 반영한다.

바. 2021년도 인사평가부터 이를 적용하되, 적용부서는 미래사업 관련 부서 등 유연평가제 적용이 필요한 부서로 한다.

## 4. 창업지원휴직 개선

가. 직원의 체계적인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지원휴직을 내일설계휴직으로 명칭 변경하고 지원분야와 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이 한다.

- 지원분야 : 기존 창업 외 재취업, 귀농귀촌까지 확대
- 지원자격 : 만 50세 이상 ~ 만 58세 미만
- 휴직기간 : 최소 2년 6개월에서 최대 4년. 단, 정년 잔여기간이 2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정년퇴직 시점까지로 함

나. 휴직기간 중 보수는 최초 1년 6개월은 월기본급의 100%를 지급하고 이후는 무급으로 한다.

다. 휴직기간 중 창업, 재취업, 귀농귀촌 등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퇴직 시 내일설계지원금과 특별학자금을 아래와 같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.

| 구 분      | 지급 산식  |
|----------|--|
| 내일설계 지원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산정기준 : 월 기본급 × 산정 월수<sup>1)</sup> × 지급률(%)<sup>2)</sup><br/>1)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내는 매2월당 1월, 5~10년은 매4월당 1월<br/>2) <math>100 + [ 35 - \{ ( 20 \div 45 ) \times \text{산정 월 수} \} ]</math></li></ul>  |
| 특별학자금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대상자녀 : 대학생 및 대입예정(정년 내 고교 졸업) 자녀<br/>* 단, 고교 기 졸업 후 3년미만 경과 시 대입예정 자녀로 인정</li><li>▪ 산정기준 : 대상자녀별 지원학기<sup>1)</sup> × 학기당 지원금액<sup>2)</sup> 합산<br/>1) 정년까지 수혜 가능한 대학장학금 잔여 지원학기<br/>* 대입예정 자녀는 대학 입학 가능한 시기부터 지원학기 산정<br/>2) 등록금의 75%(대학생 자녀) 또는 학기당 280만원(대입예정 자녀)</li></ul> |

라. 회사는 휴직기간 중 휴직자 개인의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설계 프로그램과 시장 수요가 많은 전문자격증 취득 및 심화 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시 외부기관과 연계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.

마. 시행시기는 2021년 4분기부터로 하며, 2021년에 한해 만 58세 이상 직원 중 희망자에게도 지원자격을 부여한다.

– 만 58세 이상 직원의 휴직기간 중 보수는 아래와 같이 한다.

| 휴직기간       | 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년 ~ 2년 미만 | 최초 1년에 대해 월 기본급의 100%, 이후 무급  |
| 1년 미만      | 최초 6개월에 대해 월 기본급의 100%, 이후 무급 |

## 5. 리프레시 휴직제도 개선

가. 리프레시 휴직제도 부여기준, 사용시기 등은 아래와 같이 한다.

| 구 분  | 내 용  |
|------|--|
| 부여   | 근속10년<br>• 6개월 월기본급의 80% (+ 6개월무급)                   |
| 기준   | 근속20년<br>• 6개월 월기본급의 80% 또는 12개월 월기본급의 80% (+ 6개월무급) |
| 분할사용 | • 6개월 단위 분할사용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용시기 | • 1월, 7월   |

※ 6개월의 무급휴직 기간은 신청자 중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사용

나. 시행일은 2022.1.1일자로 한다.

## 6. A직 폐지

가. A직을 폐지하고 G직으로 통합한다.

나. 시행일은 2022.1.1일자로 한다.

## II. 보수제도

### 1. 부서장 재량보상제 도입

가. 핵심가치 이행과 부서성과 견인에 대한 부서장 재량보상제를 도입하며, 지급기준과 대상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.

나. 시행일은 2022.1.1일자로 한다.

### 2. 성과급체계 개선

가. 성과급체계를 아래와 같이 한다.

| 구 분              | 전사   | 부문       | 담당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지급률<br>(월기본급 기준) | 성과배분 | 220%±40% | 220%±40% |

※ 성과배분 관련 세부사항은 ‘경영성과 창출분야’ 노사합의에 따름.

나. 지급시기, 지급규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다. 2021년 연간 전사성과 평가에 따른 전사성과급 변동분은 2022년도 중 정산한다.

라. 시행일은 2022.1.1일자로 한다.

### 3. 긴급출동보전비 개선

- 가. 긴급출동에 따른 긴급출동보전비는 폐지하고 초과근무수당체계로 통합한다.
- 나. 긴급출동시 자택, 회사/작업장소로의 왕복 이동시간은 1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에 포함한다.
- 다. 시행일은 2022.1.1일자로 한다.

### 4. 초과근무수당체계 개선

- 가.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한다.

| 구 분   |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|
| 상시일근자 | 기준연봉월정액×1.5÷209×22시간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대근무자 | 기준연봉월정액×1.5÷209×(17시간+출근일수 18일 초과 1일당 1시간) |

※ 휴가일수를 반영하여 일할 계산 후 지급

- 나. 임신기 여성은 연장근로 대상이 아니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, 아래와 같이 모성보호지원금을 지급한다.
- 임신시 200만원, 출산시 300만원(유·사산 시 100만원)
  - 지급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은 노사간 협의하여 정한다.

- 다. 시행일은 2022.1.1일자로 한다.

### 5. Pay-Band제도 개선

- 가. 협약인상에 따른 Pay-Band 하한 조정시 G1과 G2 Pay-Band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협약인상의 2배를 적용한다.

### **III. 복무제도**

#### **1. 유연근로제 개선**

- 가. 선택근로제를 업무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근로시간 설계 및 근로시간 효율화를 위해 주 40시간(일요일 제외) 총량자율근무제로 전환한다.
- 1일의 근로시간대는 06시에서 22시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, 출근일은 최소 4시간 근무한다.
  - 연차휴가, 주휴일 부여 시 기준이 되는 1일의 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.
- 나. 채택근무시에 지급하는 통근보조비는 채택근무보조비(일 6,000원)로 전환하여 지급하며, 지급주기는 월1회로 한다.
- 다. 시행일은 2022.1.1일자로 한다.

#### **2. 근속 5년 직원 글로벌문화체험 지원제도 신설**

- 가.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근속 5년 도래 직원에게 글로벌 문화체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.
- 나. 시행일은 2022.1.1일자로 한다.

### 3. 출장제도 개선

가. 직원의 자기주도적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근속 5년, 10년, 20년, 30년 도래시 아래와 같이 자기계발출장을 지원하며,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.

| 근속년수     | 5년 | 10년   | 20년/30년 |
|----------|----|-------|---------|
| 출장일수(최대) | 5일 | 5일    | 8일      |
| 출장비(한도)  | -  | 100만원 | 150만원   |

※ 출장일수/출장비는 도래일로부터 2년 이내 분할하여 사용 가능

나. 관리 대리점을 전담하는 현장 유통영업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시내출장비를 16,000원으로 상향한다.

다. 시행일은 2022.1.1일자로 한다.

### 4. 안식년휴가 및 장기근속보로금 폐지

가. 안식년휴가와 장기근속보로금은 2022.1.1일자로 폐지한다.

## IV. 복지제도

### 1. 업무용 단말기 구입 지원 및 요금제 지원한도 상향

- 가. 업무용 단말기의 교체 및 구입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 단말기 구입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, 지원대상은 합의일 현재 재직자 중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하되, 개인명의로 회선을 사용 중이거나 전환한 직원에 한한다.
- 나. ‘가’항의 대상에게 지원하는 요금제 한도는 월 최대 10만원으로 하며, 이 경우 요금약정할인(25%)을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.
- 다. ‘가’항의 지원시기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로 하고, ‘나’항의 시행일은 2022.1.1일부터로 하되, 세부사항은 노사간 협의하여 정한다.

### 2. 자기계발비 금액 상향

- 가.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지급하는 자기계발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며,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한다

### 3. 대부제도 개선

- 가. ‘주택자금’의 대부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상환기간을 최대 12년으로 연장한다. 단,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대부한도를 2억원으로 한다.

나. ‘금융기관 이자지원’의 대부한도를 1억원으로 한다. 이자지원은  
년 1.5%의 이자비용(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)에 대해 5년간  
지원한다

다. ‘긴급생활자금’과 ‘가계안정자금’ 대부는 폐지한다.

라. 대부제도 개선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 
협의하여 정한다.

#### 4. 태아/어린이보험 신설

가. 태아 또는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태아/어린이보험을  
무상으로 지원하며, 세부사항은 노사간 협의하여 정한다.

#### 5. 장애자녀 교육비 지원

가.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둔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 
교육보조비로 지원하며, 세부사항은 노사간 협의하여  
정한다.

#### 6. 어학시험비 지원

가. 어학시험비를 연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하며,  
세부사항은 노사간 협의하여 정한다.

## 7.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

- 가. 의료비 지원 신청방식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한 자동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.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(MRI, CT, 초음파)은 기존 의료비 지원방식을 따른다.
- 나. 보험급여 항목 중 가족합산(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배우자 및 자녀 포함) 본인부담금이 분기 6만원을 초과 시 그 초과액을 지원하며, 세부사항은 노사간 협의하여 정한다.

## 8. 국내 최고 수준 휴양시설 운영

- 가. 노후된 수련관을 대체하여, 최신 여가 트렌드를 반영한 국내 최고 수준의 휴양시설을 확보/운영하며, 세부사항은 노사간 협의하여 정한다.

## 9. 직원자녀 교육프로그램 개선

- 가. 현재 시행중인 자녀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개선하기로 하며, 시행일은 2022년 중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노사간 협의하여 정한다.

## 10. 현장작업복 개선

가. DIGICO KT로의 전환 및 작업환경 변화에 맞춰 현장작업복을 개선하기로 하며, 세부사항은 노사간 협의하여 정한다.

※ 2~7항의 시행일은 2022.1.1일부터로 한다.